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1. 9.
제출자 : 이천시장

□ 제안이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체제의 필요에 의해 행정기관의 호스트(서버)컴퓨터로부터 제증명 자료등을 받아 담당 공무원 없이 제반 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정보제공시스템의 사용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을 정함(안 제5조의2)
- 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정함(안 제21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이천시수입증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수입증지표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사용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5조의”를 “제5조 및 제5조의2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계기 사용”을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으로 하고, 제3항중 “계기의 고장”을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으로 하며, “계기상의”를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상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세무과
입	실·과·소장 직위·성명	세무과장 박순자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자	담당자 성명·전화	김춘래 (행정 2188)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1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지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수입증지표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p> <p>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1조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 및 제5조의2의</p> <p>-----</p> <p>-----</p> <p>-----</p> <p>②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p> <p>-----</p> <p>-----</p> <p>-----</p> <p>③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p> <p>-----</p> <p>-----</p> <p>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상의</p> <p>-----</p>